

오픈마켓 해외직구식품 판매자를 위한

식품판매등록 시 유의사항

해외사업자용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1

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등록 전 법·규정을 확인하세요! ✨

「식품위생법」제4조(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5조의2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), 제25조의3(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·성분의 지정 및 해제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44조의2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), 제44조의3(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·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)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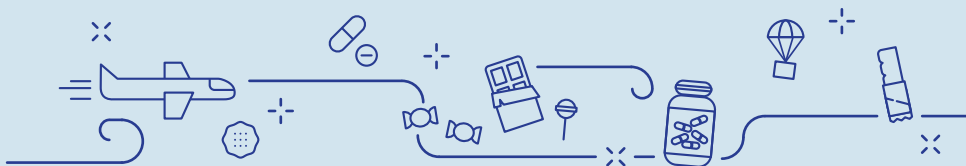
판매·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! ✨ ✨ ✨



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마약류, 의약성분, 부정물질 등 국내 반입차단 원료·성분을 함유한 위해식품 여부를 **‘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’에서 확인**

- ➔ 목록에서 확인되는 제품은 판매·구매대행이 불가능
- ➔ 목록에 게시되지 않아도 ‘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·성분’을 함유한 식품이라면 판매·구매대행이 불가능

해외직구식품 판매 및 구매대행을 상품 등록 시
‘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’을 반드시 확인!!!



3

해외직구식품 중 영양제, 근육강화 표방 제품 등은 '건강식품'이 아닌 '식품'



해외직구식품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기준 및 규격)에 따라
제조되거나 정식수입된 **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류에 해당**

- 해외직구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·광고하면 안되며, 제품의 정보는 가공식품 등에
관한 정보 제공 사항에 따라 표시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(III. 1 (21)가공식품)

1. '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표시사항

- 1-1. 제품명
- 1-2. 식품의 유형
- 1-3. 생산자 및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생산자, 수입자 및 제조국)
- 1-4. 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- 1-5.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
- 1-6. 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
- 1-7. 영양성분(식품등의표시·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)
- 1-8.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
- 1-9.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- 1-10.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”의 문구

2.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

※ 등록시 주의 사항

- ☒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·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
- ☒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**상품 소개에 앞서** 표시하는 것을 권장
- ☒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을 **'제품 상세정보 참조'** 등으로 표시
- ☒ 품목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품목 사진은 제품명이 나오는 **주표시면**과 원료성분명이
나오는 **성분표시면**을 모두 게시

4

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안돼요!



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 금지

사례 1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◆ 판매 식품에 대하여 류마티스 관절염, 퇴행성관절염,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
- ◆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며 '뇌졸중 예방', '암 예방' 등의 내용의 광고
- ◆ 식품의 섭취 시 지루성 피부염, 아토피 치료, 아토피 발진 및 피부염 증상 완화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 광고
- ◆ 치매예방, 인슐린 조절 기능에 도움, 암 발생을 막아준다는 등 질병의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

사례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◆ 제약회사 개발제품, 병원·약국 판매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광고
- ◆ 항바이러스제품, 항암제, 여성호르몬제, 천연 항생제 등 의약품으로 표현하는 광고
- ◆ 탈모 모발 성장, 모발성장 촉진제, 모발성장제 등의 의약품 표방 광고
- ◆ 공진(신)단, 경옥고, 사군자탕, 쌍화탕,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 광고

사례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◆ 면역력 강화,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, 혈액순환 개선효과 표방 광고
- ◆ 지방분해, 체중감량, 식욕억제, 피하지방 감소, 체지방 감소에 도움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의 광고
- ◆ 키 성장, 연골 및 관절건강에 도움, 유해균 억제,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, 월경 전 증후군 개선 도움 등의 광고
- ◆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

5

권장사항

해외직구식품을 판매 등록시 제품에 유통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, 상품식별 코드/제품코드 등 입력란에 공백없이 숫자나 문자 입력 권장

상품
식별
코드



다만, 영유아용 분류(0~36개월 대상), 영·유아용 이유식은 가급적 상품 식별코드(유통바코드 번호) 등록

6

해외직구식품 구매자를 위한 안내 문구를 게시해주세요.



해외직구식품 구매자를 위한 안내 문구 게시(예시)

-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상품으로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- ‘해외직구식품 올바른로’를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, 구매주의 안전정보, 국제거래 상담 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해외직구식품 올바른로 바로가기 링크

